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14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김광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5조제3호)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현행 조례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¹⁾ 참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²⁾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2 개인형 이동장치 어린이놀이시설내 규제 필요성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³⁾.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8월 기준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8만대, 2018년 14.3만대, 2019년 17.3만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산업도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3개 업체가 있었으나, 2020년 6월 기준으로 19개 업체가 있고, 일부 업체는 가입자 수가 약 1년 동안 5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함.

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필요성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국회(국회의원 홍기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17건, 2018년에는 225건, 2019년에는 44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망자도 8명 발생하였다고 함.
- 주목할 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초기에는 이용자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보행자의 사망 사례 및 연쇄추돌 사례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그림>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규모 및 전동킥보드사고 발생 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⁴⁾와 마찬가지로

3) 김하영·황성걸,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 ‘EPM(Electronic Personal Mobility)’의 시장분석과 향후 방향 제시”, 「조형미디어학」 Vol.18 No.2, 2015. p.96

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음. 본 조례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

지로 「도로교통법」의 규제대상이지만,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공원 또는 (야외)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사고 발생의 여지가 높은 편인 바, 이와 관련한 규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3 결론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여론⁵⁾을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21건으로 3,766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하며, 특히 2021년에는 1,735건에 달해 직전 해인 2020년 897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함.
- 개인형 이동장치와 교통사고가 난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40.4%인 1,383건이 자동차와 발생했으며, 보행자 사고도 34.8%를 차지해 1,191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함.
-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놀이기구’이 아닌 ‘이동수단’임에도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추세 만 큼이나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를 비롯한 보호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안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제5조에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 제한 사항 중, 제3호에 “오토바이와 개인형의 이동 장치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오토

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5) 윤아림 기자, “전동킥보드 무서워요” 규제에도 반복되는 사고…왜?, KBS, 2022.5.27.

바이는 법령 용어가 아니지 않은가. 원동기장치 등 용어 변경을 제안함

- 답 변 :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라고 지칭하는 원동기장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로 명시하였으나, 조례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어임이 동의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조문의 용어 변경을 수용하겠음

7. 토론 요지

- 규정의 일부를 법령 용어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44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입 및 주·정차를 제한하는 장치를 법령에 적합한 규정으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규정의 일부를 법령 용어로 수정함(안 제5조제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동차, 오토바이,”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 ----- ----- ----- -----.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3. 자동차, <u>오토바이</u>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 <u>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u> -----	3. <u>「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u>오토바이</u>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u>개인형 이동장치</u> 등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김광심·김현정·노애자·
이향숙·김민경·강을식·
박다미·김영권·안지연·
김진경·이도희·오온누리·
이동호·복진경 의원
(이상14인)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5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오토바이 등”을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u>오토바이</u>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 <u>오토바이</u>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u>개인형 이동장치</u> 등-----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